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 및 보호비용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9121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 및 보호비용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2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피해자등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 및 보호비용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중 일반 지원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¹⁾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범위, 지원시설 등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²⁾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제4항제3호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u>여성가족부령</u> 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u>여성가족부령</u> 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여성가족부령</u>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 <u>여성가족부령</u>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현행법 제10조³⁾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자⁴⁾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원시설은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로 구분되며, 2025년 1월말 기준 총 47개소가 운영중임.

<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현황(2025년 1월말 기준) >

(단위: 개소수)

계	일반	청소년	외국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47	23	12	1	11

자료: 여성가족부

개정안은 법제처가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시설의 사업 범위 등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점⁶⁾, 현재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이 20~50% 투입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여성 등에게 별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시설의 업무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2025년 4월 기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총 6곳(경기도 평택시, 과주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실제 피해 여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예시: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2. 그 밖에 자립·자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자등 별도 지원 현황 >

구분	지자체	지원내용			비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경기	평택	월 100만원(1년), 동반자녀(18세미만) 월 10만원(1년)	1,000만원	월 30만원 (1년)	
	파주	월 100만원(2년), 동반자녀(18세 미만) 월 10만원(2년)	1,400만원	720만원 이내 (2년)	자립지원금 500만원
강원	원주	월 100만원(1년)	600만원	360만원 이내 (1년)	
충남	아산	월 100만원(1년), 동반자녀 월 10만원 (1년, 최대 3인)	600만원		
전남	여수	월 100만원(1년)	700만원	월 30만원 (1년)	
경남	창원	월 100만원(1년), 동반자녀(18세미만) 월 10만원(1년)	700만원	360만원 이내 (1년)	

자료: 여성가족부

다만, 개정안은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인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 및 보호비용 지원 규정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등이 이용하는 자활지원센터의 업무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⁸⁾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직업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 현행법에서 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8)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전업을 위한 훈련·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 있는 자활지원센터는 총 13개임.

운영 및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한 점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¹⁰⁾, 시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50~80%)와 지방비(20~50%)가 함께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범위¹¹⁾ 및 비용 보조¹²⁾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¹³⁾

문 의 처

02)6788-5644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상담소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하는 주체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원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함.